

## 멕시코 잠정 ABS 법령: 나고야의정서에 근거한 식품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 접근 신청에 대한 잠정 절차(한국어)<sup>1)</sup>

농축산농촌개발수산식품부<sup>2)</sup>

국가 종자검사 인증 서비스

나고야의정서에 근거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접근 신청 잠정 절차

### 나고야 의정서에 근거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접근 신청 잠정 절차

본 문서는 식물유전자원 접근 신청에 있어 농축산농촌개발수산식품부(SAGARPA) 및 국가 종자검사 인증 서비스가 취해야 할 절차를 정한 문서이다. 또한 이 절차는 생물다양성조약의 유전자원 취득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기까지 적용되는 잠정 조치이다.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서식지 내 및 서식지 외의 접근 신청에 적용된다.

#### 1. 근거

**멕시코합중국헌법은** “국가는 고용의 창출, 농촌 주민의 사회복지와 국가 개

1) PROCESO TRANSITORIO PARA LA ATENCIÓN DE SOLICITUDES DE ACCESO A RECURSOS FITOGENÉTICOS PARA LA ALIMENTACIÓN Y LA AGRICULTURA CONFORME AL PROTOCOLO DE NAGOYA (<https://absch.cbd.int/api/v2013/documents/94DB9371-D679-0733-374A-EDA237B096DD/attachments/ANEXO%20I.%20Proceso%20Transitorio%20atenci%C3%B3n%20solicitudes%20e%20acceso.pdf>),

2) 2018년 12월 1일자로 농축산농촌개발수산식품부(SAGARPA)는 농업농촌개발부(SADER)로 이름 변경, <https://www.jornada.com.mx/ultimas/2018/11/30/avion-presidencial-saldra-de-mexico-el-lunes-convocatoria-para-venta-9917.html>

발에 대한 참가와 포섭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인프라 기반·생산재·신용대출·인재육성·기술 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농촌개발환경을 추진함과 아울러 토지의 최적 이용을 목표로 한 농축산업 및 임업의 활동을 촉진한다.”고 정하고 있다.

**지속가능한 농촌개발법 제102조 1항**에서는 “국가 종자검사 인증 서비스(SNICS)는 관련관공서와 기관과 합동으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·접근·사용·종합관리·품종육종자의 권리보호 및 종자의 품질 분석에 관한 정책·활동·국제협정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, 필요에 따라 제안할 책임을 진다”라고 정하고 있다. 이에 비추어 보면 SNICS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(PGRFA)에 관한 각종 활동의 조정을 담당하는 권한 기관이 된다.

**연방 종자 생산 인증 및 상거래법 제5조 V항**에서는 “관련 관공서 및 각 기관의 참여와 협조 가운데 종묘의 분석·보전·평가·인증·추진·공급·상거래 및 사용에 관한 프로그램, 행동 및 합의를 결정·실시한다”라고 정하고 있다.

**SAGARPA 내규 제53조 II항**에서는 국가 종자 검사 인증 서비스 권한으로 “관련된 기타 관공서 및 기관과 합동으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전·접근·사용 및 종합 관리, 취득자의 권리 보호, 종자의 분석·보전·인증·촉진·제공·상거래 및 사용에 관한 정책·행동 및 합의를 제안한다”라고 정하고 있다.

**SAGARPA 내규 제19조 VI항**에서는 생산성, 기술개발총국(DGPDT)에 4가지 직권 중 하나로 “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,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(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것도 포함한다)에 관한 프로그램 및 전략을 실시한다”라고 정하고 있다.

**SAGARPA 내규 제9조 V항**에서는 법률 고문 직권에 대해서 “성내(省内) 각 부서 및 필요에 따라 분권화 조직 또는 주지국(州支局)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, 성의 관할 업무의 자문기관이 된다”라고 정하고 있다.

**SENASICA의 내규 제 15조 XIX항**에서는 식물 방역 총국장의 직권으로 “식물과 그 생산물 및 부산물의 수출입, 및 국제 수송과 국내 이동, 병원체의 운송업자가 될 수 있는 수송 차량·기기류·기자재에 관한 식물 방역 요건을

정한다”라고 정하고 있다.

## 2. 용어

본 규칙의 적용상 다음의 용어는 이하에서 정하는 의미를 지닌다.

**접근:** 서식지 내 및 서식지 외의 보전하의 식물유전자원 및 그 부산물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전통적 지식의 취득 및 이용.

**수집물:** 특정 개체군 또는 계종(系種)의 유전적 다양성을 대표하는 식물 유래 소재로, 그 보전을 목적으로 보전센터 또는 식물개량 프로그램에서 보호 지정된 것을 말한다.

**유전자 은행, 종자에 의한 장기 보존(베이스 컬렉션), 종자에 의한 중기 보존(액티브 컬렉션) 또는 생체에 의한 포장(圃場)(필드 컬렉션):** 서식지 외에서 식물유전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을 말한다.

**식물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합의:** 식물유전자원 및 그 부산물, 또는 이들에 관련되는 전통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인정한 제공자 및 이용자 간에서 체결되는 법적 문서.

**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적인 지식:** 식물유전자원 이용에 관련하여 전통의 맥락에서 형성·계승되어 온 전문 지식·기술·혁신·관습·가르침 등을 포함하는, 집단 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보유되어 온 동적이면서도 항상 변화하는 지식을 의미한다.

**서식지 외에서의 접근:** 이용자가 식물유전자원의 유전자은행, 생체의 수집, 식물원 등에서 유전자원을 얻는 것을 말한다.

**서식지 내에서의 접근:** 자연환경에 서식하는 종의 경우라면 자연의 생태계로부터 이용자가 자원을 얻는 것, 사육종·양식종의 경우라면 고유의 특징을 진화시키는데 이른 환경 및 커뮤니티 बैं크에서 자원을 얻는 것을 말한다.

**파생물:** 생물의 대사에서 유래하고, 살아 있는 혹은 죽은 생물체에서 얻어지

는 추출물을 포함한 분자, 자연의 분자의 결합 또는 혼합물.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실제로 가치가 있거나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적 관습 또는 혁신에서 유래된 이익.

**제공자:** 식물유전자원, 그 파생물 또는 이들에 관련된 전통적 지식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.

**식물유전자원**은 실제로 가치가 있거나 잠재적 가치를 가진 식물 유래 유전 소재라고 정의된다. 이들 자원은 농업자가 전통적 수단으로 보전 및 개발하고 새로운 품종 및 기술을 개발하는 기반이 된다.

**이용자:** 식물유전자원, 그 파생물 또는 이들에 관련된 전통적 지식을 요청하고,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.

**식물유전자원과 그 파생물 이용:** 식물유전자원의 유전적이거나 생화학적인 구성(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응용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)에 관한 연구 개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

**SAGARPA :** 농축산농촌개발수산식품부

**SNICS :** 국가 종자검사 인증 서비스 SAGARPA의 분권적 조직.

### 3. 절차의 목적

본 절차서는 서식지 내 및 서식지 외에서의 식물유전자원 접근 신청에 대응한 SAGARPA 및 SNICS 내부의 절차를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.

### 4. 프로세스 당사자

**환경천연자원성:** 나고야의정서의 정부 창구로, 신청자에 의한 신청서 제출처이다.

**농축산농촌개발수산식품부(SAGARPA):** 농촌개발 정책 전반을 책정, 실시, 평가하는 권한이 있는 당국이다.

국가 종자검사 인증 서비스(SNICS): 국내 감독 당국으로서 지속적인 농촌개발법 제 102조에 입각한 식물유전자원으로의 접근에 관한 신청서를 심사하는 기술 기관이다.

식물유전자원 제공자란 식물유전자원, 그 파생물 또는 이들에 관련된 전통적 지식을 보유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분류된다.

## 5. 절차

식물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내규가 정하는 절차는 이하와 같다.

### 5.1 신청

**스텝1:** 신청자는 나고야의정서의 정부 창구인 천연환경자원부(SEMARNAT)에 부록에 기재된 요건을 충족시킨 신청서를 제출한다.

**스텝2:** 천연환경자원부(SEMARNAT)는 식물유전자원 접근을 신청하여 제출한 서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과 절차 개시를 통지하는 심의 기록을 SNICS에 송부한다.

### 5.2 평가

**스텝3:** SNICS는 접근 신청의 법적·기술적 예비 심사를 실시한다.

**스텝4:** SNICS는 법률고문실(OAG), 농업청 생산성기술개발국(DGPDT), 농업식품위생무해품질청(SENASICA)의 멤버로 워킹 그룹을 편성한다. 신청 안건이 전통지식에 관한 접근이라면 토착민발전국가위원회(CDI), 제공자 및 접근과 관련된 타국(局) 또는 타기관에 자문을 요청한다.

**스텝5:** 전술한 워킹 그룹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 30일 이내로 정보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.

**스텝6:** SNICS는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예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OAG의 심의에 회부한다.

### 5.3 인증의 발행

**스텝7:** 심의기록 및 의견서를 작성한 후 SNICS는 최종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OAG에게 심의기록 복사본을 첨부한 의견서를 송달한다. OAG는 정부 창구인 천연환경자원부(SEMARNAT)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증명서 발급 절차 개시를 요청한다.

**스텝8:** SNICS는 접근 신청 절차가 현행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음을 유전자원 제공자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이러한 접근을 통해 상품 또는 상업화 가능한 사용방법이 개발된 경우에 제공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를 통지한다.

### 5.4 용도 변경

**스텝9:** 연구 조사 결과 상품 또는 상업화 가능한 사용 방법이 개발된 경우 ABS의 체결이 필요해진다. 양당사자는 SNICS에 출두하여 용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SNICS로부터 계약 서식을 수령한다.

**스텝10:** SNICS 보유자 및 이용자 사이에 용도 변경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 SAGARPA-SNICS에 가서 용도 변경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합의서의 복사본을 인수한다.

**스텝11:** 체결에 이른 경우 그 내용을 SNICS에 신고하고 계약서 또는 합의서 복사본을 제출하여 SNICS의 심의에 회부하고 ABS 제출 증명서 발행을 신청한다. 이것으로 SAGARPA의 절차가 종료된다.

### 5.5 제3자의 참가

**스텝12:** 이용자는 프로젝트에서 결정된 활동에 한정하여 상호 합의 조건하에 연구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제3자와 법적 문서를 교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공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SAGARPA-SNICS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. 이 때 이용자는 제3자와의 사이에서 교환한 합의에서 접근 대상이 되는

PGRFA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엄격한 비밀엄수조항을 포함함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SAGARPA-SNICS에 신고를 해야 한다. 제3자와의 사이에서 교환한 법적 문서는 모두 그 복사본을 SAGARPA-SNICS에 제출하고 제출물은 심의기록과 함께 보관된다.

## 5.6 감시

**스텝13:** 이용자는 허가를 받은 접근에 의해 얻어진 성과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는 기한까지 제공자 및 SAGARPA-SNICS에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 동 보고서에는 최소한 목표의 달성도 · 성과품 ·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도를 기재한다. 동일하게 연구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달성된 성과, 미래의 과학적 개발 및 응용 가능성을 기재한 최종보고서도 제공자 및 SAGARPA-SNICS에 제출해야 한다.

## 6. 부록

### 서식지 내 및 서식지 외에서의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 시 필요 사항

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기재된 데이터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
- 1) 신청자의 성명, 회사명, 해당 시 법정대리인의 성명
- 2) 통지 등의 발송 주소, 수령 권한 보유자의 성명
- 3) 국내 또는 국제
- 4) 신청대상 식물유전자원, 그 파생물, 또는 이와 관련된 전통적 지식에 관한 접근을 동반한 활동의 실시 방법 및 접근 신청 근거.
- 5) 신청 대상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환경(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)
- 6) 해당 식물유전자원이 서식지 외 상태로 멕시코에 존재했던 것이 나고야 의정서 이행 전이었는지 이행 후였는지를 기재
- 7) 신청처의 감독 당국명
- 8) 장소와 일시
- 9)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

식물유전자원 접근 신청 시 첨부 필수 사항.

- 1) 신청자의 신분을 **보증하는 공적 서류**(공적 ID, 연방납세자 등록번호, 회사 정관 등 해당하는 것.)
- 2) **최소한 이하의 내용을 포함한다.** 프로젝트 개요, 서문, 전체 목표 및 개별 목표와 그 근거, 가설, 사용하는 자재 및 방법, 참가 기관, 기대 성과, 공정표, 참고문헌. 프로젝트 본문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내용을 기재한다: 정확한 제공자 정보, 식물유전자원을 취득하는 컬렉션 또는 장소의 일반 데이터, 파생물인 경우 그 학명, 관련된 전통적 지식의 경우 그 명칭 또는 취득방법, 취득 예정 표본 수 또는 양, 접근 기간.
- 3) SAGARPA-SNICS가 정한 서식으로 작성된 PGRFA 제공자에 의한 **정보에 근거한 사전 동의서.**
- 4) SAGARPA-SNICS가 정한 서식에 의해 작성된 PGRFA 제공자 및 이용자 쌍방이 서로 합의한 조건.